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9.3.(목) 조간	배포	2026.9.2.(수)
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	책임자	팀 장	유 환	(02-3145-7471)
		담당자	선 임	박한수	(02-3145-7473)

[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안건 ❹]

'26.9.10.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.
-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 등 안내 실시 -

주 요 내 용

□ 자동차보험은 **피해자**를 **신속히 구제**하고, **가해자**를 **민·형사상 책임**으로부터 **보호**하는 등 **사회안전망**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나,

○ **일부 환자**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**보험금 누수**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**자동차보험 손해***가 발생하는 상황

* 자동차부문 보험손익 : '24년 △97억원, '25년 △7,080억원, '26.1~5월 △1,637억원

○ 이러한 **적자**가 **누적**될 경우 **선의의 보험가입자**의 **보험료**가 **인상**될 수 있는 등 **국민 가계**에 **영향**을 미칠 우려

➜ **보험금 누수 방지**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**장기적인 지속 기반**을 마련하는 한편, **선량한 보험가입자**의 **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**를 추진

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〉

1 경상환자 장기치료(8주 초과)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

○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이 개정됨('26.9.10. 이후 사고부터 시행)에 따라, 자동차사고로 **8주**를 **초과**하여 **치료**받고자 하는 **경상환자**에 대한 **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** 내 **전문의료인**의 **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**

2 향후치료비 지급관행 합리화

○ **향후치료비**는 **장래 치료 필요성**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**중상환자**에게 지급하고, **경상환자**는 **실제 발생한 치료비**를 **보장**

※ 감사원은 '24.4~5월 국토부·금융위·금감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명확한 향후치료비 지급실태에 대하여 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
※ 지난 '26.8.27.(목) **제4차 「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」**에서 **논의된 사항**으로, **위원회**에서 **제시**된 **자문의견**을 **반영**하였음

Ⅰ.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

◈ **(경상환자 개념)**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따른 상해의 구분 중 **12~14급 해당 환자**를 **경상환자**로 지칭

○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'**단순 타박상**', '**염좌**(삔 것)' 등이 해당

※ 골절·장기손상 등 중상환자(상해 1~11급)는 심사 대상에 미해당

1 경상환자 장기치료(8주 초과)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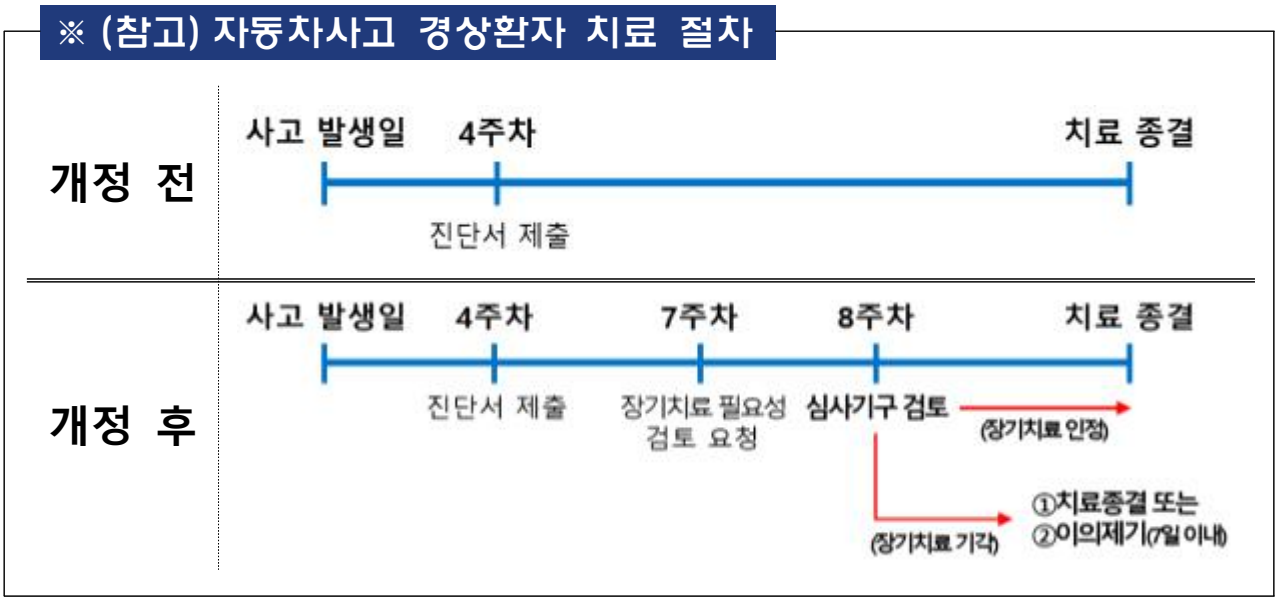
○ **(개요)** **경상환자**가 **8주**를 **초과**하여 **치료**를 받고자 하는 경우, **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**(이하 '자배원') 내 **전문의료인**이 **치료 필요성**을 **검토**

○ **(절차)**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**7주 이내** 보험회사에 **입증서류***를 **제출**하고,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**7일 이내 결과****를 **통보**

* (필수서류) 진단서, 진료기록부 사본, (영상검사 있을 시) 영상CD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**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'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'에 이의제기 가능

※ (참고)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 절차



2 향후치료비 지급관행 합리화

○ **(개요)** **향후치료비**는 **중상환자**(상해 1~11급)에게 **장래 치료**를 위해 필요하다고 **객관적**으로 **인정**되는 **비용**을 **지급**하고,

- **경상환자**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**충분한 치료**를 **보장**받을 수 있도록 **개선**

Ⅱ.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프로세스 정비

◈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**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**를 **인지**하지 못해 **적정한 치료**를 받지 **못하는** 등 **피해**를 **방지**하기 위해

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**사고처리 과정**까지 **소비자 유의사항**을 **알림톡** 등을 활용하여 **적시에 안내**토록 **보상 안내 프로세스**를 **정비**

□ **(가입 시 안내*)** 자동차보험 **신규 가입** 또는 **갱신** 시 자동차사고로 인한 **치료비 보상 절차** 및 **향후치료비 지급기준**을 안내

* 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기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괄 안내 예정

※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안내(예시)

✔ **경상환자의 장기치료(8주 초과) 필요성 확인 절차**

- 상해등급 12~14급 해당 교통사고 환자 중 염좌 또는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의 경우, 사고일로부터 8주까지는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보장되나,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인정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보장됩니다. 단, 임산부 및 영유아 환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✔ **향후치료비 지급기준**

- 상해등급 1~11급 해당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.

□ **(사고접수 시 안내)** 보험회사에 **자동차사고**가 **접수**되는 즉시 **피해자**에 대하여 **치료비 보상 절차** 및 **향후치료비 지급기준**에 대한 **안내** 실시

※ 자동차사고 접수 시 안내(예시)

✔ **경상환자의 장기치료(8주 초과) 필요성 확인 절차**

- 상해등급 12~14급 해당 교통사고 환자 중 염좌 또는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검토를 희망하시는 경우,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·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, 검토 결과는 전문의료인의 심의를 거쳐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. 단, 임산부 및 영유아 환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또한,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'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'에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✔ **향후치료비 지급기준**

- 상해등급 1~11급 해당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.

□ **(사고처리 중 안내)**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**검토 신청**을 **누락**하지 **않도록** 사고발생 이후 **3~4주차, 6~7주차** 등 **2회**에 걸쳐 **추가 안내** 실시

※ 자동차사고 처리 중 안내(예시)

✔ **치료비 지급 보증기간**

- 고객님의 진단(OOO)상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사고일로부터 8주까지는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진단서상 소견 기간에 따라 지급보증이 유지됩니다.

✔ **경상환자의 장기치료(8주 초과) 필요성 확인 절차**

-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, 사고일로부터 7주 이전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으로 구성된 공적심의기구에서 검토를 진행하며, 심의 결과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.

▶ [필수 제출서류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진단서, 진료기록부 사본, (영상검사 있을 시) 영상CD

▶ 사고일로부터 7주가 되는 날 : YYYY년 MM월 DD일

▶ 사고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 : YYYY년 MM월 DD일

◈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하기 ☞ (보험회사별 URL 제공)

◈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☞ (이의제기 URL 제공)

Ⅲ. 시행 시기

□ 경상환자에 대한 **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**는 **'26.9.10. 이후** 발생하는 **자동차사고부터 반영**하고,

○ **향후치료비 지급기준**은 '26.9.10. **개정된 약관**으로 체결된 **계약**('26.10.25. 보험기간 개시)부터 적용

□ 또한, **소비자**가 **정확한 정보**를 가지고 **보상**받을 수 있도록 **보험가입**부터 **사고처리 과정**까지 **단계별 안내**도 **'26.9.10.부터 실시** 예정

※ 금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사항 관련 **구체적인 내용**은 **[붙임] FAQ 참고**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 **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FAQ**

가.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관련

1.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모든 경상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?

※ 경상환자 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따른 상해 12~14급 해당 환자

□ 일부 나이롱환자로 인한 **보험금 누수 방지**를 위한 **제도개선 취지** 및 **환자**의 **특성**에 따른 **후유증 위험** 등을 고려하여,

○ **영유아** 및 **임산부**는 원칙적으로 **장기치료 심사 대상**에서 **제외**하여 검토 절차 없이 **계속 치료**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○ 상해등급 12~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**염좌** 및 **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**에 한하여 **장기치료 필요성**을 **심사**

2. '26.9.10. 이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하는지?

□ 경상환자에 대한 **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**는 **'26.9.10. 이후** 발생한 **사고**(개정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시행일)부터 적용되므로,

○ **'26.9.10. 이전**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**아직 치료**가 **진행 중**이더라도 **금번 개선사항**은 **적용**되지 **않음**

3.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

□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, 사고일로부터 **7주 이내** 보험회사에 **상해 정도** 및 **치료 경과** 등을 **증빙**할 수 있는 **자료***를 **제출**

* (필수서류) 진단서, 진료기록부 사본, (영상검사 있을 시) 영상CD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○ 자료를 제출받은 보험회사는 **지체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**에 **장기치료 필요성 검토**를 **요청**하고,

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심사 요청일(자료 제출일)로부터 **7일 이내 검토**를 **완료**하여 환자에게 **통보**할 예정

4.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지연으로 치료기간 8주를 초과하는 경우, 검토 완료 시까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?

□ 자동차사고 환자가 **7주 이내**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**신청**하였음에도, **심사기구**의 **검토**가 **지연**되어 **8주**를 **초과**하는 경우,

○ **검토 완료 시**까지 발생한 **치료비**는 **보험회사**가 **부담***(지불보증)하며, **검토 완료 이후**에는 그 **결과**에 따라 **지불보증 여부 결정**

* 검토 결과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, 검토 완료 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 부담

5.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?

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**장기치료 필요성 검토**에 소요되는 **비용**(심사 수수료 등)은 **보험회사**가 **부담**하며, **환자**는 **검토 비용**을 별도로 **부담하지 않음**

6.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?

□ 환자는 **진단서** 및 **진료기록부 사본**을 **필수**로 **제출**하여야 하며, **영상검사**(X-ray, CT, MRI 등)를 진행한 경우*에는 **영상CD**도 제출 필요

*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, 이미 시행한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 제출 (환자 선택에 따라 검사 후 제출 가능)

○ 또한, 그 외 **손해**를 **입증**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**자유롭게 제출 가능**

7. 입증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?

□ **필수 제출 자료**(진단서, 진료기록부 사본, 영상CD)의 경우 **보험회사**가 **관련 비용**을 **보상***

* 현행 4주차 진단서 발급 비용의 보상 절차와 동일하게 입증서류 발급 시에는 환자가 우선 병원에 비용을 납입하고,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 수령

○ 다만, **환자**의 **판단**에 따라 추가 제출한 **임의 자료**에 대한 **비용**은 **환자 본인**이 **부담**할 필요

8. 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?

□ 환자가 자배원의 **검토 결과**에 **이의**가 있는 경우, **결과**를 **통지**받은 날로부터 **7일 이내 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」**에 **심의·조정** 신청* 가능

*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, 환자 요청 시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

○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심의·조정 신청일로부터 **14일 이내 심의 결과***를 **환자** 및 **보험회사**에 **통보** 예정

*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시 제출되었던 자료 및 1차 검토 결과 등을 기초로 심의·조정

9. 입증서류 제출기한(7주 이내) 및 심사기준일(8주) 판단 시 기산점은 언제인지?

□ **장기치료 필요성 검토**와 관련된 **기간 판단** 시 **사고발생일**을 산입하지 않고 **다음 날**부터 **계산**(초일 불산입)

나.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관련

1.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?

□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**근거**가 **없음**에도 환자의 **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**에 대한 **검토 없이 관행상 향후치료비**를 **지급**해 왔으나,

○ 약관 개정을 통해 향후치료비는 **중상환자***에게 **장래 치료**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**객관적**으로 **인정**되는 **비용**을 **지급**하고,

*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[별표1]에 따른 상해 1~11급 해당 환자

- **경상환자**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**치료 완료 시**까지 **실제 발생한 치료비**를 **보장**토록 기준 마련

2. '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'의 기준이 무엇인지?

□ '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'이란 **향후 치료**의 **목적** 및 **내용** 등이 **의학적**으로 인정되어 **관련 서류**를 통해 **입증** 가능한 경우를 의미

3.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시행일은 언제인지?

□ 자동차보험은 **기존 계약 만기 45일 전**부터 **갱신** 가능하므로 '26.9.10.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**'26.10.25. 보험기간**이 **시작**되는 계약부터 시행

※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사항은 통상 보험기간 시작일(책임개시일) 기준으로 시행